

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정이유

-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적 관용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,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등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(안 제4조)
- 도지사는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(안 제6조)

-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7조 ~ 제9조)
-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, 지원, 교육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~ 제12조)
-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내 지역의 민간단체,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 운영과 지원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둘째, 안 제6조에서는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 - 셋째,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넷째, 안 제10조 ~ 제12조까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, 지원,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의 국제결혼, 취업이민 등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회적응과 정착, 국어교육, 직업교육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넘어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,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문화의 차별로 인한 계층간, 지역간, 세대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